

【사건번호 2022-040】 한국철도공사 여객열차운행 데이터 사건

1. 개요

- 피신청인: 한국철도공사
- 대상 공공데이터: 여객열차운행 데이터
- 신청목적: 열차정보 제공서비스

2. 신청취지

- 피신청인은 여객열차운행 데이터(이하 ‘이 사건 데이터’라 한다.)*를 Open API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.

* 여객열차번호 및 운행일자, 역명 및 ARS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(다음 표의 출력항목)를 제공

입력항목	출력항목 (총 26개, 중복제외)	
여객열차번호 및 운행일자	열차정보	열차번호, 운행일자, 열차종별*, 운행종별(정기열차/임시열차), 운행구간, 운행방향(상행/하행), 열차현황(운행대기/운행중/운행종료/열차운휴)
	조성정보	차량번호, 연결위치번호, 설비<방송실·승무원실, 자동심장충격기, 자동판매기, 화장실>
여객열차번호 및 운행일자	운행시각표	열차번호, 운행일자, 열차종별, 역명, 계획도착시각, 계획출발시각, 실제도착시각, 실제출발시각, 도착지연시각, 출발지연시각
역명 또는 ARS코드	및 지연정보**	열차번호, 운행일자, 열차종별, 계획도착시각, 계획출발시각, 실제도착시각, 실제출발시각, 시발역명, 열차시발시각, 종착역명, 열차종착시각, 현재지연시각, 시발/통과/정차/종착 여부

* KTX, KTX-산천, KTX-이음, SRT, ITX-청춘, ITX-새마을, 새마을, 무궁화, 누리로, 통근열차, ITX-경부

** 경유 예정인 모든 역에 대한 정보(무정차 통과역 및 정차역 모두 포함)

3. 사실조사

가. 데이터 보유·관리 현황

- 피신청인은 「한국철도공사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철도여객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열차운행관리, 전동열차운행관리, 승무사업관리, 열차조성관리, 명령지원 등 운전취급에 관련된 각종 업무를 조회 또는 수행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정보시스템(XROIS)을 운영하고 있음

- 이 사건 데이터의 대부분은 DB로 관리되고 있으나, 일부 데이터는 수기로 작성되어 별도 파일로 보관되어 있고,* 일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**

* 설비정보: 방송실·승무원실, 자동심장충격기, 자동판매기, 화장실, ** 연결위치번호, 출발지연시각

나.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“공공데이터”는 “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”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)를 의미
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근거, 철도여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DB화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

다.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

-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,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대부분을 보유·관리하고 있으며,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데이터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피신청인은 현재 Open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,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API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해당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함
-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은 공공기관이 ‘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, 요약,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’고 규정함
-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며,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, 정제, 가공하는 등 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처리나 그 외 공공데이터법이 공공기관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
- 또한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에 ‘이용자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’(제2조제4호) 하도록 하고, ‘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’(제24조제2항)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여러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공

신청을 거부한 것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, 향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※ 위원회 2021-003 사건에서도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Open API를 신규 개발하여 제공토록 권고한 바 있음

- 한편,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할 수 없다면 피신청인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코레일톡(승차권 예약 애플리케이션)의 API를 활용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,
 - 이 경우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안상의 우려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

4. 조정내용

가. 조정결정 사항

- 피신청인은 여객열차운행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한다.
 - 단, 제공시기는 피신청인이 Open API 개발 등 제반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이후로 한다.

나. 조정결정 이유
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(제17조제1항), 이용자가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(제2조제4호) 하도록 하고,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(제3조제1항),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(제24조제2항).
 - 이 사건 관련 법령,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, 기타 사실조사결과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데이터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며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,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.
 - 다만,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개발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, 피신청인은 관련 예산이 확보된 이후 이 사건 데이터

제공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되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한다.

- 한편, 신청인이 대안으로 제시한 코레일톡에서 사용하는 API를 활용하는 방안은 인증·보안 등 구축·운영 방식이 다르고 운영중인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.

5. 조정결과

- 상기와 같은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 성립